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3. 12. 27(금)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경재 위 원 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희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5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 속기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4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45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이경재 위원장

- 제45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5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7건, <보고안건> 5건이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3-46-172)

○ 이경재 위워장

-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개 법인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신청은 지난 10월 28일~11월 15일까지 접수를 했고, 허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신청법인 임원의 결격여부를 심사해서 지난 12월 5일~6일까지 2일간 허가 심사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허가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위원단이 위치정보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 결과 5개 법인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래 ※ 표시를 보시면 「위치정보사업 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에 따라 심사사항별로 100점만점에 60점 이상,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 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심사결과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의결 후 위치정보사업 허가 통보 및 허가서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 ㈜로즈존 등 34개 사업자 (2013-46-173~206)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 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번 조사개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배경입니다. 인터넷상에서 경품이벤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사업자(4개), 그다음에 경찰청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22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한 사업자(6개), 그다음에 민원이 제기된 사업자(2개)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였습니 다. 주요 경과는 작년 4월~금년 8월까지 경찰청에서 통보되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금년 8월까지 현장조사를 했고, 금년 9월 30일~10월 16일까지 의견조회, 의견접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사결과입니다. 34개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자별 행정처분(안)은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처분 검토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제4장의 규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제64조의3의 과징금, 또는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제64조제 4항의 시정조치 명령 부과가 가능하고,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징 금입니다. 과징금 부과대상 사업자는 1개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동의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큰 사업자입니다. ㈜로즈존으로 매출액이 2억 9,000만원입니다. ㈜로즈존은 조사협조 및 보호노력 정도 등을 감안하여 30% 감경한 139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부과 유예사업자는 10개 사업자입니다. 위 반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고의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반행위 관련 매 출액이 없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부과(유예) 기 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과사업자는 15개 사업자 입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었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반 정도가 경미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의 가중 및 감경사유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하여 부과 대상 15개 사업자에 대하여 총 2억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 과할 계획입니다. 아래 가중 및 감경 적용 기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부 과 유예 14개 사업자입니다. 개인정보 누출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 에 노력한 경우, 그다음에 폐업하여 위반행위의 반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에 따른 감경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여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해서 14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감경 사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정조치 명령 13개 사업자입니다. 현재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개선할 것을 명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수사기관 고발 유예입니다. 과징금 부과대상 11개 사업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9조의2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반복적이지 않고, 고의라고 보기 어려우며, 개선조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아니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3-46-207~209)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다>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나눠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 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안건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가 '13년 5월 17일~7월 16일과 '13년 8월 22일~10월 31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 요내용입니다. 조사 배경 및 주요 경과입니다. 조사 배경은 방송통신위원회가 5월 17일~7 월 16일, 8월 22일~10월 31일 기간 중 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10월 23일부터 조사를 시작하 였습니다. 그다음에 10월 23일~12월 26일까지 현장조사 및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 상은 이통3사의 전체 조사대상 기간 중 전체 가입건수 810만여 건 중 40만 4,423건 약 5% 를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위반사항입니다. 위법성 판단기준 27만원을 초 과한 비율은 KT가 65.8%, SKT가 64.3%, LGU+가 62.1%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번 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형태별 위반율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날짜는 SKT 33일, KT 29일, LGU+ 29 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통3사가 지급한 평균 보조금 수준은 41.4만원이고, 사 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T 42.1만원, LGU+ 38만원 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위법성 판단기 준 27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의 이통3사 평균은 56.7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57.8만원, SKT 57.3만원, LGU+ 53.9만원의 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통3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보조금 지급내용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 지급자료와의 불일치 정도를 확인한 결과, 이통3사의 불일치 평균은 29.3%, 사업자별로는 LGU+ 32.5%, SKT 30.3%, KT 24.8%순 이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관련 근거는 이통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른 시정명령 과 동법 제5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그다음에 금년 3월 14일 위원회 의결에 따른 과열 주 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제재가 가능합니다. 먼저 시정명령입니다.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행위의 즉시 중지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동 시정명 령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에 과징금 부과입니다. 과징금은 기준 과징금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을 거쳐 최종 과 징금을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 과징금은 각사의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부과기준율을 KT는 1.8%, SKT는 1.7%, LGU+는 1.6%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기준 과징금을 산정하였 습니다. 참고로 박스 밑에 ※ 표시를 보시면 지난 7월 제재시 위반율이 73.8%인 경우에 부 과기준율을 2.0% 적용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적 가중은 이통3사는 최근 3년간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4회 받았으며, 이번 위반행위가 5회째이 므로 3회째부터 10%씩 가산하여 기준 과징금의 30%를 가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 다. 관련근거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 가중입니다.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보조 금 지급내용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 지급자료와의 불일치 정도에 따라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LGU+는 20%, SKT는 15%, KT는 10%를 가산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박 스는 각 사별 자료 불일칠 비율과 추가적 가중 비율입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박스 밑에 최종 과징금은 총 1,064억 원으로 SKT 560억 원, KT 297억 원, LGU+ 207억 원 입니다. 다음 주도사업자 선정입니다. 금년 5월 17일~7월 16일, 8월 22일~10월 31일 기간 에 대해 위반율,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 등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벌점의 합이 SKT 73점, KT 72점, LGU+가 6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점 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 간의 격차가 미미함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봐서 주도사업자 를 선정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제재 종합은 <붙임>에 참고로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피심 인 의견도 <붙임> 참조로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근 1년에 걸쳐 시장과열의 결과 3사간의 득실이 LGU+가 가장 순증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1년에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알기로 50~60만 정도 순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러한 순증은 위반과 또 시장 혼탁을 유발한 결과라고 봐야겠지요? 예를 들면 LGU+만 가장 깨끗하게 장사하고 순증도 60만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데 지금 벌점 산정 결과를 보면 SKT 73점, KT 72점, 무려 10점이 떨어진 62점으로 LGU+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조사기법이라고 할까, 현장을 포착하는 능력의 한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 제로베이스에서 사무국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과징금의 범위는 적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주도자가 73점, 차위자가 72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회의에서 주도사업자만을 최소 2주일의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에 비추어 보면, 1점차의 변별력을 통해 2주일의 영업정지를 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이라고 할까, 상식에 비추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경우에 과징금은 총 1,064억 원으로 가고,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도사업자 선정 문제가 상당히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의 경우에는 변별력이 없어서 둘 다 할 수도 없고 고민입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기존에 한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내야 할 것이다, 그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역시 이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변별력 판정에 실패한 것이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주도사업자 선정 없이 과징금으로 가자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보조금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단속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조금 이 근절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책당국으로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자 보조금이라는 것이 물론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몹시 과열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위와 2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지금 변별력 문제 때문에 저희가 주도사업자 처벌을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영업정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이 기조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무국에서는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자 보조금 주도사업자 선정하는 방식을 다시 결정한 것이 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대희 상임위원

- 거기에 새로운 변수를 더 집어넣어서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변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과징금은 유례없이 수위가 높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메시지는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후에도 주도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엄단 방침은 여전하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양문석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양문석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전에 제일 많이 질문하셨는데 오늘은 왜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심인의 의견진술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 측 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 의견진술인 입장)

그러면 참석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에서 참석하신 이상헌 상무, 맞습니까?

○ 이상헌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 상무

- 예,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조창노 본부장, 맞습니까?

○ 조창노 SK텔레콤㈜ 영업본부장

- 예,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SK텔레콤㈜ 측의 입장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헌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 상무

-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 이상헌입니다. 지난 7월 단독 신규모집 금지조치와 수백억 원의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제재를 앞두게 된 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조사대상 기간의 경우에 저희는 과거 대비 추가적인 가입자 감소를 감내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6월 LTE의 상용화를 통해서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됐던 상황에서 과거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는 것은 SKT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계속적인 가입자 이탈로 인해서 일부 시장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지만 시장 안정화를 위한 SK텔레콤㈜의 노력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조사와 관련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으로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대상 기간이 길어지면 시장 과열도 장기화될 수 있고 사업자들이 제재에 대해 가지는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조사 착수 자체가 시장 안정화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장조사 착수 기준도 시장 과열 심화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정부 정책에도 더욱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 김충식 부위워장

- SKT가 가입자 이탈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위 사업자의 지위라고 할까, 이런 입장에서 위반 도 1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 이상헌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 상무

- 저희가 아무래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은 해 왔지만 사업자들이 상호 경쟁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가입자를 잃게 됐을 경우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따라가고 또 사업자 간에 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법률에 1위 사업자다, 지배사업자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를 알고 있지요?

○ 이상헌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 상무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위 사업자가 위반 1위, 금메달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법률적·윤리적·도덕적 측면에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SKT 스스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헌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 상무

- 예, 알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같은 말씀인데 이 자리에서 다음에는 1점 차이라도 주도사업자로 스스로 한 열흘이라도 영 업정지하겠다는 생각, 그런 각오로 할 수 있겠습니까?

○ 이상헌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 상무

- 예,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다음에는 점수가 비록 적더라도 1위 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렇게 할 테니까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 이상헌 SK텔레콤㈜ CR부문 정책협력실 상무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질문 없으시면 진술인들 일어나셔도 됩니다.

(SK텔레콤㈜ 의견진술인 퇴장)

이어서 ㈜KT 측 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KT 의견진술인 입장)

참석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 참석하신 이현석 본부장, 맞습니까?

○ 이현석 ㈜KT Sales운영총괄 Sales본부장

- 예,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석수 상무님, 맞습니까?

○ 이석수 ㈜KT 대외협력실 상무

- 예,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KT 측 입장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수 ㈜KT 대외협력실 상무

- 안녕하십니까? ㈜KT 대외협력실 이석수 상무입니다. 우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피심인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보조금 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심결 이후 다시 법 위반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소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다만, 금번 심결을 하심에 있어 피심인은 지난 7월 심결 시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 보조금 경쟁을 최대한 자제하여왔다는 점을 감안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피심인은 7월 심결 이후 단독 영업정지를 포함한 기간을 자성과 보조금 준수를 위한 기간으로 삼아 비록 보조금 위반행위를 근절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경쟁적인 과도한 보조금 지급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피심인은 실적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7월 18일 귀 위원회의 심결 이후시장 안정화 노력을 통해 위반율 및 평균 보조금 수준을 대폭 하향시켰고, 마케팅비도 지속축소시켜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피심인은 향후로도 과열이나 위반을 주도하지 않고 안정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자제해 왔다고 의견진술하시지만 이 결과 벌점이 SKT 73점, KT가 72점 1점 차이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이현석 ㈜KT Sales운영총괄 Sales본부장

- 처음 들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다시 알려드립니다. SKT 73점, KT 72점, LGU+ 62점으로 나왔는데 이 숫자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위반은 KT가 금메달입니다. 지난번에 위반 1위로 영업정지를 당했고 또 이번에도 시장혼탁에 가담해서 그 결과로 1점 차이로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홀연히 산타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렇게 결과는 2등으로 나왔지만 이러저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제가 보기에 KT의 시장과열에 대한 자세는 변한 것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석 ㈜KT Sales운영총괄 Sales본부장

- 저희는 7월 단독 정지 이후에 진실하게 안정화에 노력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 번호이동 판매량을 9% 이상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 속에서 위기가 지속되면서 불 가피하게 행동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하여간 통절한 반성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이다음에 벌어질 시장조사 결과에 대해 서도 행정청이나 KT가 서로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KT의 영업방식이 일선을 관리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현석 ㈜KT Sales운영총괄 Sales본부장

-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7월 단독 이전에 조금 높았던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하고, 심결 이후 더욱 더 반성하고 노력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보십시오. 지금 1점 차이로 1위를 간신히 면하기는 했지만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비율도 KT가 65.8%로 1위, 그다음에 이통3사가 지급한 평균 보조금 수준도 41만원인데 그것을 초과해서 KT가 43만원으로 1위, 또 위법성 판단기준을 초과한 보조금이 평균이 56만 7,000원인데 이것도 KT가 57만 8,000원으로 1등입니다. 1등이 3개, 정말 운 좋게 1점 차이로 2등 한 것이지, 사실상 1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보건대 그때 힘이 들었으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수치로 보건대 그렇게 반성한 기미가 거의 안 보인다, 그러면 만약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1등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수치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현석 ㈜KT Sales운영총괄 Sales본부장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수치 중에는 7월 18일 심결 전과 후가 저희가 변화가 크다는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심결 전에 조금 높았던 것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18일 이후에는 저희가 판매량 자체를 9% 이상 줄일 정도로 마케팅비용도 축소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알겠는데 새해 들어서는 이런 것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 앞에 1위 사업자에게도 그런 이야 기를 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정말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마케팅으로 개념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현석 ㈜KT Sales운영총괄 Sales본부장

- 예, 동의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KT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통신사업을 주도해 왔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맏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맏형으로서의 지위는 어디 가고 시장을 탈환하기 위한 노력, 발버둥밖에 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실적이 좋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보조금이 국민들을, 이용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 해서 국민의 후생을 깎아먹는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KT도 같은 책임을 느끼고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는 KT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현석 ㈜KT Sales운영총괄 Sales본부장

- 저는 가격표시제에서부터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었고, 이번에 파파라치 제도 정책국에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조기에 확대시키면서 단말기 유통법까지 조기에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말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KT가 전향적인 자세로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석 ㈜KT Sales운영총괄 Sales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양문석 위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O 양문석 상임위원

_

○ 이경재 위원장

- 오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네요. 더 이상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KT측 피심인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현석 ㈜KT Sales운영총괄 Sales본부장

-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이현석 ㈜KT Sales운영총괄 Sales본부장

- 저희가 진짜 앞으로 개선하고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 주도사업자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서 작은 차이지만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청드리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KT 의견진술인 퇴장)

다음은 ㈜LG유플러스 측 관계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십시오.

(㈜LG유플러스 의견진술인 입장)

참석자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에서 참석하신 강학주 상무님!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 이경재 위원장
- 박상훈 상무님!
-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채널전략담당 상무
- 예.
- 이경재 위원장
-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LG유플러스 측의 입장을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저희 회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서 시장을 안정화하고 정부의 보조금 관련 규제 방침을 준수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다시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에 앞서 다음의 몇 가지 점에 대해 건의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받을 과징금을 예상하건대 모두 3사가 똑같겠지만 저희 회사에 누적 부과되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2.6에 광대역 LTE 네트워크의 신규 구축을 위해서 1위, 2위 사업자인 타 통신사업자 대비 최소한 3~4배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예상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사에 대한 제재가 관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둘째로 저희 회사는 2012년 세계 최초 전국망 서비스 개시 이래 본원적 경쟁력 확보 및 이를 통한 경쟁을 최우선순위 경영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3년 올해에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망내 무제한 요금제, 100% LTE, TVG 4채널 및 홈보이 등 LTE를 중심으로 한 유·무선 신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함으로써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혁신을 선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2G 시대와 달리 4G LTE 시대에서는 고객의 인식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해외에서도 프랑스, 노르웨이 등 다수의 통신사가 저희 회사를 벤치마킹하고자 잇에

따라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재원규모가 제한된 보조금 경쟁에 앞서 서비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리딩하는데 최우선 관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건의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LGU+ 측 피심인의 입장은 벌 받으러 와서 자기 자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항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LGU+가 3사 중에 직영점 비율이 가장 높다면서요?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어쨌든 근 1년 사이에 60만의 순증(純增)이 났고, 그 순증은 LTE 홍보나 자체 서비스 개선 에도 뿌리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통신시장의 근원을 보면 시장의 혼탁과도 매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현재 벌점 나와 있는 것은 다행히 LGU+가 모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한 순증과 벌점 간의 갭이 영원히 메워질 수는 없다,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지만 다 내려다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LGU+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능적으로 대처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LGU+의 시장 혼탁에 대한 문제점도 반드시 무섭게 추궁당하는 수가 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채널전략담당 상무

- 예, 알겠습니다. 시장의 보조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여기에 LGU+가 자유롭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의 가입자 성과와 보조금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의 이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2G, 3G 시절에 고립된 주파수로 인해 단말기 공급 자체가 불리한 상황에서 광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고, LTE 시대가 시작되면서 경쟁력에 변화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가입자 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경쟁력의 변화, 또는 경쟁력의 열세가 다시 시작된다면 현재까지 확보하고 있는 가입자를 언제까지나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규 측면에서의 보조금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 왔지만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 월 3.5%에 달하던 해지율이 '13년 10월에는 2.9%로 월 0.6%p의 해지율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달라진 브랜드 위상에 의해서 기존 가입자가 타사로 이동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과거에는 타사 대비 훨씬 높았지만 그 격차가 매우 감소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잠깐만요. 오 국장, 이번에 구간이 종합과 월별 구간이 2개 전기, 후기가 있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중의 한 군데 LGU+가 종합순위에서 짧은 구간이었지만 1위가 나온 적이 있었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굳이 전반, 후반을 나누어서 벌점을 합계하면 아무래도 후반부는 LGU+가 첫 번째로 제일 높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 자료를 LGU+ 측에 제시하십시오.

○ 홍성규 상임위원

- 보십시오. 지급 자료와의 불일치 정도가 LGU+가 1등입니다.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거짓 말을 제일 많이 한 것이 1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전체로는 3등인데 자료를 가장 불일치한 정도가 높고 불성실했다는 것이 1등인데 왜 그렇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채널전략담당 상무

-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런 점을 보면 시장에서는 LGU+가 후반부쯤에 상당히 시장혼탁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 기들을 조사결과나 여론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 불일치 정도가 1등이라는 점은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그렇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채널전략담당 상무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자료 불일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LGU+가 1등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장대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 김대희 상임위원

- '자료를 뒤져봐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LGU+가 스스로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덕성 문제이기도 하고, LGU+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단말기 유통법은 사실상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쭉 추진해 왔던 이용자 차별,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 처벌에 대해서 총 집합화된 그러한 체계이고 쭉 구체화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에 저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단계에서 잘 될 수있도록 협력할 예정입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LGU+가 막내사업자 위치에서 지금 발군의 약진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피심인의 의견진술장에 와서 자기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듣기가 거북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저도 같은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박 상무께서 본원적 경쟁력이 50만 순증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콘셉트를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본원적 경쟁력이 50만 순증의 경쟁적인 요인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상당히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듣다듣다 제가 웬만하면 오늘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 국장, 하반기 2개 중에 조사기간이 2개지요? 8월 22일~10월 31일까지 위반율이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LGU+가 높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우리가 6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5월 17일~7월 16일까지 한 텀이 있었고, 그다음에 8월 22일~10월 31일까지 한 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반율이 두 번째 텀 위반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본원적 경쟁력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이야기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KT, SKT 서비스 질이 확 떨어지고 LGU+ 서비스 질이확 높아졌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채널전략담당 상무

-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의 의견진술이 조금 무례했다면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무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원적 경쟁력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등 했다, 그리고 우리는 본원적 경쟁력으로 갔다, 그리고 시장 혼탁에 대해서 약간의 책임은 있으나...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아니지요.

○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채널전략담당 상무

-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더…, 올해 전체의 순증 성과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전체적인 의미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간별로 봤을 때 저희가 항상 시장을 가장 깨끗하게 끌고 가면서도 항상 그런 가입자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만큼 본원적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 라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말씀하시면 조금 그 부분은….

○ 양문석 상임위원

-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핸디캡을 안고 시장경쟁을 했었고, 그리고 이탈률도 높을 수밖에 없었고, 가입률을 높인 만큼 이탈률의 반비례도 컸었다는 부분인데, 이제는 사실상 LTE 쪽으로 들어오면서 기존 핸디캡들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3사가 경쟁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3사가 경쟁해서 현실적으로 플러스알파의 요인도 없으면서 50만 순증이면 상당 부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영업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장에 있어서 결국 보조금인데, 전형적인 hit and run, 치고 빠지기라는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잘 관리된 직영대리점, 이런 부분들이 앞서 부위원장님이나 홍성규 위원님께서 지적한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잘 관리된 직영대리점입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본원적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발언인 것처럼 대답하면 울컥하지 않겠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채널전략담당 상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애초에 그렇게 답지를 써 온 것도 잘 못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본원적 경쟁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혼탁함에 대해서 징계하는 자리에서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채널전략담당 상무

-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직영점은 전산시스템 내 전체가 다 나타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잘 관리되고 숨긴다기보다는 유리지갑처럼 아주 잘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영점에 관한 한 드러나는 만큼 잘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박 상무님, 자료 불일치 이야기를 홍성규 위원님께서 거짓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LGU+가 이렇게 반응하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자료 불일치 비율을 대폭 올려볼까요? 지난번 7월 우리가 심의·의결할 때도 자료 불일치는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우리가 할 때도 LGU+가 자료 불일치가 계속 해서 1등입니다. 작년 12월에 사실상 1등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정지 기간도 가장 길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24일인가 했었지 않습니까?

○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채널전략담당 상무

- 예.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면,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기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와 있는데 진짜 웃을 일이지 않습니까?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을 평균 46만원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숫자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이 단말기 제조업체에서도 그 안에 제공이 되는 것이지요?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대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46만원을 보조금으로 줬는데 대개 통신사 또는 제조업체에 서 어느 정도 비율로 주고 있는 것입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계산을….

○ 이경재 위원장

- 정확하게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비율만 대충….

○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채널전략담당 상무

- 그 시기나 모델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40%에서 많게는 55% 그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워장

- 퍼센티지로요?

○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채널전략담당 상무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거의 절반이지요?

○ 박상훈 ㈜LG유플러스 MS본부 채널전략담당 상무

- 예.

○ 이경재 위원장

- 제가 과징금을 매길 때마다 통신사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공동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통신사만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단말기 유통법에 정말 제조업체에서 얼마나 보조금을 주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대희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지금 과도한 과징금 관계는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통과되면 열심히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단말기 유통법이 아직은 통과 안 됐는데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상황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용자로서도 대개 어디는 60만원 주고 어디는 20만원 주고 이런 것이 없어지고 예측 가능한, 대개 이 모델이라고 하면 전국 어디서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보조금을 받는다, 그래야 이용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전략실 정책협력담당 상무

- 예.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LG유플러스 의견진술인 퇴장)

피심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의결하기 전에 상당히 오늘 3사 피심인들의 발언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전체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문제에 있어서 결과와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측들이 지금 다 빗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시장조사 요원들이 적고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충분한 샘플의 안정성들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치고 빠지 기식의 기법은 날로 고도화되어 가는데 우리는 적은 숫자로 그것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의 조사요원이 숫자적으로 아주 적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나 우리가 예상했던 그리고 조사의 결과와 시장의 결과가 정말 다르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샘플링 조사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 그 자체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장이 정말 고민하시고 대폭적인 인원 확대와 전문화, 인터넷은 치고 빠지고 날고 기는 그 고

도화된 수법들을 24시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주말에 어떻게 잡을 것인가, 거기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들이 투입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끊임없는 불편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불편함과 거북스러움들이 계속해서 지배적으로 이 논의의 장을 배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통신사들의 사실상 위법적 마케팅에 있고, 그리고 또 한 측면으로 그것들을 감시하고 그리고 벌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터무니없는 인원부족과 예산 부족, 그리고 고도화되는 저들의 수법에 대한 전문성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오늘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한 번 세워 봅시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시정조치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에서 준비한 과징금 그리고 이번에는 1위, 2위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으니까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은 의견에 동의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아까 KT 측에서 최후 진술에서 1% 차이라도 차이는 차이고 선도는 선도다, 고로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부위원장님!

○ 김충식 부위원장

- 2가지를 생각합니다. 우선 LGU+의 문제에서처럼 가장 벌점이 10점 이상 차이가 나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수치를 인정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수치가 정말 적정한 조사방법에 의해서 완성된 것인가 하는 그 완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3점과 72점에 대해서 확신하지만 거기에 엄격한 차이를 두고 차별해서 중벌하기에는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라면 통상 여론조사에서 말하는 오차범위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영업정지라고 하는 상당히 강한 칼을 2주일가까이 구사할 수 있을지, 그것은 행정당국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생각하더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나 SKT가 시장지배사업자입니다. 지배사업자를 가중처 벌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의견까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지금 지배사업자가 이렇게 비록 차이는 별로 없지만 가장 주도사업자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SKT도 지배사업자로서

새로운 각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같이 의견으로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워

- 위원장님, 아까 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다만 기록상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 입장에서 비록 인력이 적고 우리가 제한적으로밖에 자료를 못 본 그런 한계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원인과 잘못된 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교함이 정도에 따라서 지금처럼 73점과 72점을 변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큰 방향으로 봐서 사무국에서 조사해서 나온 결과들은 맞는 방향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양위원님 우려가 타당하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그것이 전달되어서 마치 방통위가 일을 잘못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나 첨가 드립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것은 기록상으로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 국장!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시정조치방안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통3 사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은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그다음에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의 보고입니다. 그다음에 과징금은 SKT 560억 원, KT 297억 원, LGU+ 207억 원 등 총 1,06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열 주도사업자는 선별하지 아니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지난번에 667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사상 최대지요?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하여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단말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이 진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방금 정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추진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9월까지 표 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연구반을 8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월~10월까 지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련사업자 의견 수렴 및 법령개정안을 마련했고, 지 난 11월 20일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가> 임시조치 이의제기권 신설입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 터 사생활침해·명예훼손성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거나 포털 등의 자율적 판단으로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게재자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 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시조치기간 중에 게재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제 기 이후 후속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포 털 등은 해당 사안을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재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조치기간 만 료 60일 이후 해당 정보를 영구 삭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의 강화입니다. 개정 사유는 인터넷상 권리침해성 정보에 관한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방심위가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분쟁조정부가 소수위원으로 되어 있 고, 조정 기간이 60일로 매우 길고, 그 다음에 결정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은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하고 기능 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상임)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방통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하도록 할 계획입 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아래 ※ 표시를 보시면 임시조치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된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조정으 로 10일 이내에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은 조정결정의 실효성 확보 를 위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아래 박스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업계 자율심의 강화입니다. 먼저 개정 사유 는 포털 등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임시조치는 법적 분쟁 발생 시 포털의 배상책임을 감면 하는 규정이 없어 시행이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개정 내용은 업계 자율 심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게시글 관련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해 피해상담·접수·처리기능을 통합한 '인터넷이용자 피해센터'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제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오늘 보고 후에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인터넷상 갈수록 심해지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한 방법 말고 명예훼손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 의해서이번 제도가 보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다만 인터넷이용자 피해구제센터가 지난 주말 개소가 되어서 운영에 들어가고 있는데여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운영하는 인력이 4명밖에 안 돼서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이쪽에 몰리면 그 인원 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조직과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통위에서도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법이 현재 인터넷 발전과 관련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국정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면서도 역기능이 대단히 많아지고 있다, 개인 명예훼손, 지난번에 자살로 몰아가는 사이버 폭력까지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는 책무, 이런 것이 아주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의 인터넷 판공실, 중국에는 인터넷을 진흥도 하지만 새로운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엄청난 법규 제정을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러나 명예훼손이 됐을 경우에 이것을 빨리 조정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적인 조정기구를 만드는 것이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13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나> "13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13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는 제32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의결(2013.9.4.)하여 시행된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와 활용방안 등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평가개요입니다. 평가기간 은 지난 9월에서 11월까지이고, 평가대상 사업자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등 민원다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아래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이동전화 분야는 이통3사, 그 다음에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KT, SKB, LGU+, 티브로드, CI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 씨 엠비 이렇게 8개 사업자입니다. 평가체계는 관련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 가 세부지표를 심의·확정하고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평가기준은 평가지표는 크게 이 용자보호 관리체계, 두 번째 사전적 이용자보호 활동, 세 번째 정부민원 처리실적 등 3개 분야의 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아래 박스는 세부 평가지표 및 방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평가등급은 지난번 위원회 에서 매우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보통(80점 이상), 미흡(80점 미 만) 5개 등급으로 평가등급을 매기기로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결과입니다. '13년도 평 가결과 '매우우수' 등급은 없었고, '우수등급' 사업자는 2개 사업자로 이동전화 분야에 SKT, 초고속인터넷 분야에 KT였습니다. 아래 박스는 각 사업자별로 등급의 평가결과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센티브 부여 및 평가결과 활용입니다. 먼저 과징금 부과 시 감경입니다. 감경대상 및 비율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한정하여 '매우우수등급'은 20% 이내, '우수등급'은 10% 이내 감경 가능하도록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래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과징금 고시 감경비율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재발방지 조치 등 할 때는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경기간은 평가대상연도의 익년, 이 번 평가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경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우수사업자 포상은 분야별로 '매우우수등급' 사업자에 대해 방통위원장 상장 수여할 계획인 데, 이번에는 해당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별로 우수·미흡사항 안내 및 업무 개 선 유도입니다. 각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 항목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을 자세 히 안내하여 구체적인 이용자보호 업무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감경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예, '감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해 주고 가볍게 해 주고 한다고 감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경감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

- 똑같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것이 같은 뜻인데 주체가 행정기관일 때는 감경(減輕)이 맞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의결사항 >

라.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 OBS경인TV㈜ (2013-46-210)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라>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 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OBS경인TV 재허가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7조에 의거 ㈜OBS경인TV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인데, 이는 지난 제43차 전체회의에서 ㈜OBS경인TV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 등을 확인한 후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 보류함에 따라 재상정하는 것입니다. 일 반현황과 재허가 심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 경과 역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BS경인TV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 주요내 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광고매출은 매년 약 20억 원씩 증가하 고, 인력운영 효율화 등 비용감소를 통해 '14년부터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 니다. 그리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14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보유액을 유지할 계획이 라고 밝혀 왔습니다. 내년 말 최소 87억 원을 보유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증자는 '13년 영업손실이 '12년 대비해서 161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해서 경영실적이 개 선됨에 따라 '14년도에는 50억 원을 증자할 계획이고, 3월 말 주총 및 이사회를 통해서 결 의하고, 5월 초에 주금납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증자추 진 의사록과 추진일정, 주요주주 투자의향서, 최다액출자자 이행각서 및 이사회 결의서 등 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14년도 흑자 전환 등 경영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 다액출자자의 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15년에서 '16년에 걸쳐 약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추가 증가할 계획임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콘텐츠 제작비 규모는 '14년 도 312억 원에 대비해서 다소 축소하여 내년도에는 약 296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공동제 작 확대 등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향후 매출증대와 연동하여 수익 발생시 최우선적으로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계획임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다액출자자 (백성학 회장)의 국회위증·무고 관련 대법원 유죄판결은 '07년 허가당시 제출한 간첩혐의 관 련 이행각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며, 사옥은 ′17년 6월경 인천 계양구로 이전할 계획임을 제시해 왔습니다. 다음 전문가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OBS가 지난 12월 9일 재허가 의결 보유 이후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은 이전에 비해서 그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OBS가 '13년도 경영실적 개선을 전제로 해서 '10년도 재허가 조건 등에 따라 이행해 야 할 증자규모, 시기 등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내년 상반기 50억 원 증자 이행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후에 추가 증자 시기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보다 구체화시켜 이행토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광고매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비용감축이 오히려 콘텐츠 품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서 현금 유 동성과 최소 방송프로그램 제작 투자비 등을 반드시 확보토록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집니 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OBS와 최다액출자자의 방송사업 의지 및 시청권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O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재허가신청서, 추가로 제출 한 경영계획,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이행각서 및 의견청취 시 약속한 사항 등의 확실 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붙임 1>과 같이 조건을 부과하고, 지난 제4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사업자 공통조건 및 권고사항도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 러서 조건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안정적인 방송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해 가 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금년 말까지 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고, 내 년 7월 말에는 '14년도 상반기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보유 실적을 점검한 후에 8월 말에는 추가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제출 받아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붙임 1> 재허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재허가 시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계획 중 에 '14년도 상반기 증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실적을 증자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 그리고 '10년도 재허가 조건과 '12년도 시정명령 시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고려해서 향후 재무상황 등에 따른 추가 증자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14년 8월 말까지 회계법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할 것, 그리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15년부터 적정 현금 보유액을 '13년 재허가 시 제출한 '14년 말 현금보유액, 약 87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그 이 행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는 '13년도 제작투자비 311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매 년 결산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그리고 상기 조건 이외에 '13년도 재허가 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및 재무구조 개선계획, 콘텐츠 강화계획, 사옥 이전 계획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실적을 매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 출할 것, 그리고 최다액출자자는 재허가 시에 제출한 증자계획, 이행각서 내용과 의견청취 시 약속한 사항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그리고 최다액출자자는 당사자 관련 법원의 판 결취지를 존중하여 방송사업자로서 사회적 신뢰와 공적책임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 력할 것 등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지난 제4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신 민영TV 방 송사업자에 적용한 공통적인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이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또한 ㈜OBS경인TV에도 동일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제출된 추가 답변서에는 백성학 회장의 의사가 담겨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러면 2014년 상반기에 내기로 한 50억 원의 출자액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달하겠다고 합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단 주요주주, 4대주주까지 포함해서 총 50억 원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 한바 있고, 그 부분은 투자비율에 따라서 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주총 때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보통 일반 건물분양에서도 의향서라는 것은 법률적인 기속(羈束)이 없습니다. 그것은 임시로 가짜 도장으로 찍고 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문제는 지상파 OBS가 제출한 자료에도 도저히 꿈에 불과한 장밋빛 망상을, 예컨데 KBS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또 코바코가 결합판매비율을 OBS만 이렇게 따뜻하게 해 줄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런 것도 문제이고, 그런 것은 당연히 현실적으로 무참히 깨질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지상파 영업추이가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에 50억 원, '16년에 50억 원 댈 사람은 냉정한 사업가들이지 않겠습니까? 수지가 맞지 않으면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꾸준히 조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무국도 또 방통위도 예의주시해야 하고, 특히 OBS의 경우에 지금까지 약속 위반의 상습성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재허가에 대해서도 최다액출자자를 다시 불러서 예외적으로 청문을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음을 사무국이 명심해서 예의주시하고, 그런 부분을 국민들 앞에 헛된 공약을 믿고 방통위가 이상한 행정을 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OBS가 이행해야 할 사항 등을 저희들이 재허가 조 건 안에서 적시했습니다만 그 시기에 따라서 실적 등을 저희들이 받아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행정조치를 그때그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김대희 상임위원

- 투자계획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전망을 해 온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1차적으로 50억 원을 증자하고 그다음 상황을 보면서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 리가 연차적으로 하라고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말에 상황을 점검해서 이것 이 이행여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까지 조건이 이 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무엇이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일단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역시 불이행하면 그에 따른 방송법상의 제재조치까지 가능합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일정한 시정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방송평가에도 점수로 반영이 되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평가에 반영됩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내년도 상반기에 50억 원 증자계획은 '14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내년 상반기….

○ 이경재 위원장

- 상반기만의 50억 원이 아니고….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내년도 상반기에 결정해서 주금납입을 5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것이 상반기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50억 원인데 상반기까지 한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계획서 온 것을 대충 보면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 보유하겠다는 내용이지, 콘텐츠에 주력해서 그쪽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재허가 조건에는 하여튼 작년도 수준의, 금년도 수준 실적 이상으로 프로그램 제작투자비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는데, OBS가 시청자 대역 확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또 번호도 좋기 때문에 콘텐츠만 잘하면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현상유지를 위해 적자를 안 보겠다, 콘텐츠에 투자하지 않고 버티고만 있으면 현상유지는 되지만, 그러나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것은 곧 쓰러지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콘텐츠에 총 집중하는 그런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시청률이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로 보아지고, 다만 방송 개국 초기에 과다 투자했던 부분들이 계속 감소하면서 금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311억 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의 투자액은 확보토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영상황이 좋아지면 보다 더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여기에 요청한 것들 가만히 보면 전부 KBS 수신료가 올라가면 또는 중간광고가 되면 또는 광고공사 미디어렙 쪽에서 결합판매비율을 높여주면,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리 의존하고 정부가 투자해도 내용이 부실해서 방송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각별히 주지시켜서, 하여튼 콘텐츠 제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자구노력이 최고의 생존 전략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OBS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송들도, 지역방송들도 자꾸 무엇을 늘려 달라, 정부지원을 늘려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늘리면 스스로 살아날 길이 있다는 것을 모든 방송사에게 알려주는 측면에서도 그것을 강조해 주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 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마.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국악광주 FM방송국 (2013-46-211)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마>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신규 라디오방송국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접수

된 (재)국악방송의 국악광주 FM방송국에 대한 허가 심사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사대상은 국악방송이 신청한 국악광주 FM방송국이 되겠으며, 방송구역은 광주광역시 일원과 나주시, 담양군 일부가 되겠습니다. 허가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방송·경영·기술·소비자 부문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방송통신위원장님께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기준 및 배점입니다.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방송국을 확대하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타당성에 관한 배점 비중을 강화하여 중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심사사항별 배점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여부 결정은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획득하는 경우 '허가'로 의결하고, 6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로 의결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까지 해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바. 채널A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13-46-212)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바> '채널A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 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채널A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안)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위합니다. 경과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승인조건 위반 내용입니다. 채널A 주요주주인 舊 ㈜삼양사는 '11년 11월 1일 ㈜삼양홀딩스와 新 ㈜삼양사 등으로법인분할하면서 채널A 주식을 新 ㈜삼양사로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채널에이가 승인장을교부받은 '11년 4월 21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의 인정을 받지 않은 사항으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시 부과된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피심인의 의견은 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 승계는 일반적으로 매각을 의미하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인 분할에 따른 주식의 이전으로 소유권의 귀속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승인조건에서 금지한 처분에 해당되며, 이는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승인조건을 위반한경우로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채널에이에게 방통위의 인정을 받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시정명령을 통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정명령은 ㈜삼양사가 주주로서 참여했는데 주식처분을 자기들 내부의 법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법인분할하면서 자기들은 이것이 같은 회사다, 그런 뜻에서 일종의 보고를 안 한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런데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해서 승인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사.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2013-46-213)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사>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방송분쟁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린바 있으며, 10월에 행정예고를 거쳤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직개편 관련 사항 반영입니다.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간 업무가 분리됨에 따라 규칙 총 37개 조항중 방통위와 미래부가 각각 수행하는 업무관련 조항 8개는 그 소관을 분리하고 미래부가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 관련 조항 10개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방송분쟁조정 관련 사항 개정입니다. 방송분쟁조정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IPTV 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방송분쟁조정 실청서류보완절차를 신설하여 그 근거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분쟁조정 불응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 불응절차는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이 개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5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조정 과정 또는 조정안 수락여부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개진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정불응절차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방송분쟁조정위원장의 결정권 삭제입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표결결과가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서류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대신에 방통위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위임근거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이동된 재난방송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이 잘못 표기된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관보에 게재하여 1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보고사항 >

다. 방송법·IPTV법 통합 법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다> '방송법·IPTV법 통합 법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 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방송법·IPTV법 통합 법제정비 추진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방송 화경 변화를 반영하여 양법에 대한 제도정비를 위해 구성·운영한 "방송통신 법제정비 연구 반"의 활동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배경과 주요 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연구반의 주요 논의 결과입니다. 방송법령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입니다. 현행 법령은 전송기술의 특성, 즉 설비기반에 따라 방송 사업을 정의하고 수직적으로 구분하고 있어서 동일시장의 경쟁 서비스 간에도 규제 수준이 다르고 역무침해 논란도 있음이 지적됐습니다. 그 결과 현행 수직적 규제체계는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가 출연할 때마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법령체계를 중장기적으로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 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성숙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공적책무 부담이 강한 지상파방송사업에 대한 규제는 현행체계를 유 지하고 시장변화에 민감한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체계는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방송법령 통합 방안입니다. 제시된 기본원칙은 방송법과 IPTV법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편익의 제고'에 두어야 하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의 적용을 통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사업자간 경쟁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성·공익 성을 강조하는 방송법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IPTV법이 지향하고 있는 기본철

학을 존중하되, 공익성과 산업성을 조화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방송전송 기술방식에 따른 방송법상 사업분류 체계는 유지하되, 채널운영, 소유제한 등 서비스 규제체계 중심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 다. 주요 논의내용입니다. 사업자 분류 측면에서는 IPTV를 현행 방송법령상 유료방송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상파방송사업, 유료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콘텐츠제공사업으로 구 분하되, 방송사업자의 실시간 방송은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비실시간 방송은 방송콘텐츠제공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유 제한 관련해서는 방 송법상 종편·보도 PP에 대한 1인 지분제한, 대기업·외국자본·일간신문의 지분참여 제한 등 의 기준을 IPTV법상의 종편·보도PP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입 규제 등에 관해서는 PP 등 콘텐츠 제공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사업권역 제한 등의 사항은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방송법상 방송평가 대상에 IPTV를 포함 시키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IPTV를 포함한 방송시장의 사후규제 관련 법령정비는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방송분야 금지행위 법제정비 연구반"을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방 송법·IPTV법 통합법안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15년 1/4분기 중에 방송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소유제한에 방송 법은 신문·뉴스통신은 방송법에서는 30%, IPTV법에서는 49%, 대기업 10조 이상은 방송법은 30%, IPTV법은 4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법령에 저촉되는 사업자는 없다고 했는데 없건 있건 어차피 법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제한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래서 연구반에서 제시한 안은 어차피 방송법과 IPTV법 소유제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가긴 가야 하는데, 일반적인 추세는 규제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했을 경우에 현재 종편은 실질적으로 IPTV에 방송하더라도 지금 방송법상 제한을 받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송법상의 제한규정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해 온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법에는 49%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이 안에 따르면 현재 방송법에 따라 49%가 아니라 지금 대기업은 30%, 신문·뉴스통신은 30%로 가자는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

수하겠습니다.

라. 201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라> '201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실시한 201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 가 결과(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평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과 추진 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절차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는 지난 5월에 의결해 주신 「'1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방송시장을 유료방 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고, 「방송사업 자 재산상황 공표집 , 그리고 방송사업자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단위시장별로 경쟁 활성화 정도를 분석·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평가 대상은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의 거래관계를 대상으 로 해서 방송시장을 획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13년도 방송시장 개관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쟁상황 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IPTV, 종편PP 등 신규 사업자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콘텐츠 품질향상 등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증가 효과가 발 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구역별 평균 시장집중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IPTV 진입과 케이블TV 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 가입자 비중도 증가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전국 1,545명 대상으로 KISDI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작년도 3.2점에서 금년도 3.32점으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규모 측면에서 보면 전 체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11.3%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유료방송시장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17.5% 증가한 3조 6,585억 원이었습니다. 지상파방송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 면에 PP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총매출액 및 매체별 점유율 추이는 아래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장별 경쟁상황평가결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우에는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방송구역별 시장집중도가 완화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KT계열의 가입자 점유율이 증가하여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가 커지는 등 다소 유료방송시 장에서의 KT 비중이 높아진 측면이 파악됐습니다. 주요 유료방송사별 가입자수 추이는 그 래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T의 경우 특히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우위가 유리하게 작용해서 위성과 IPTV을 결합한 KT계열의 가입자 점유율이 증가하고, 특히 결합상품의 가 입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IPTV 품질도 KT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은 6페이지입니다. 방송채널거래시장의 경우입니다. 전체 방송시장에서 지상파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핵심적인 방송콘텐츠 공급자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됐습니다. 유료방송 플랫폼으로부터 분배받는 일반PP의 방송수신료 수익규모가 '11년도 3,895억 원에서 '12년도는 5,011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수신료 시장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CI 계열이 IPTV에 채널을 공급하면서 수신료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려할 사항으로는 지상파재널 재전송권 거래 협상이 대부분 타결되었습니다만 향후에 재전 송권 대가 수준에 대한 논란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주요 MPP의 방송수신료수익의 점유율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입니다. 종편 도입으로 외주제작비 총규모가 증가하고 외주프로그램에 대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요집중이 완화 되면서 프로그램 거래시장이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외주제작시장에서 지상파방송의 수요점 유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와 PP의 외주제작비 추이는 그래프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방송광고시장입니다. 지상파방송광고는 위축되고, 보도·종편채널의 광고는 확대됨으로써 시장집중도가 완화되고,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광고주의 채널선택권이 확대 되어 방송광고시장이 경쟁적으로 변화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방송광고시장의 총규모는 3조 3,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 3 사 계열사를 포함해서 광고매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됐습니다. 특히 MBC와 SBS 광고 매출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에 KBS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사항은 미디어렙에 서 유료방송광고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지상파 광고판매 시에 유료방송광고를 끼워 판매하 는 등 광고주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점을 집중 모니터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 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마친 후에 좀 더 정리해서 내년 3월까지 2013년도 방송 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광고 총 거래가 3조 3,33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라디오와 홈쇼핑 광고를 제외했는데 라디오와 홈쇼핑이 혹시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이 조사에서는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원래 홈쇼핑은 제외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5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홈쇼핑은 그것이 광고가 아니고 그 자체가 콘텐츠이기 때문에 별도 광고는 없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외주제작사와 관련해서 지상파와 일반 PP들이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에 대한 통계는 숫자가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PP들과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어떻게 맺고 하는지에 대한 규모는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상파방송사가 여기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명확하게 잡혀야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데 아마 방송사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회계분리라든지 이런제도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보다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외주제작이 2011년에서 '12년으로 가는데 일반PP의 경우에는 거의 2배가 늘어났는데 얼마 전에 종편의 외주제작이 갑자기 늘었다는 것으로 나왔던데 금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 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마.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건의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마>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건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방송광고의 균형 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 안」을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경과사항입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6월에 구성되었고, 9월부터 11월까지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했습

니다. 그리고 10월부터 11월까지 워크숍 및 중간검토를 거쳐 12월까지 심의한 내용이 되겠 습니다.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주요 건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광고 편성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지상파방송은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 내에서 광고총량 규제, 방송광고 종류별 개별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종류별 규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간 매체경쟁 력 차이를 감안하여 광고총량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간접광고 협찬고지에 대해서는 방심위 심의규정 개정 및 세부 가이드라인을 구체 화하고 협찬고지규칙을 명확히 개정하여 협찬고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하 였습니다. 방송광고금지품목에 대해서는 광고허용 및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담당기관과 협의 하되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 중소방송 방송광고 진흥 기반 조성 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KBS 수신료 현실화에 따른 KBS-2TV 광고변화와 연계하여 현행 공 영렙, 민영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고,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영역을 인터넷, 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확대하고, 미디어렙 사업협회를 설립하여 방송공공성 증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라디오 광고진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라 디오광고지원 전문기관인 라디오방송광고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라디오 적합형 신유형 광고기법 도입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계열 광고회사를 통한 광고대행을 일정비율로 지 양토록 하고, 중소광고대행사에 대한 방송광고 대행수수료 차별화 등 방송광고 대행시장 상 생지원 방안을 공정위, 미디어렙 등과 협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광고산업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광고산업진흥을 위한 광고산업진흥기금 설치를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양방향 맞춤형 광고, VOD 광고 등 신유형 광고를 포함하는 광고 통계 체계를 새롭게 마련 하고, 통계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편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 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여부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원칙에 따라 허용이 필요하지만 KBS 수신료 현실화 논의를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12 월 30일 방송통신정책자문위원회에서 오늘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입 니다. 그리고 1월부터 2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1월 중에 방송광고시장 활성 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 장 활성화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는 일정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정책건의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 이경재 위원장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고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아주 종합적으로 모든 문제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 이 건의내용이 그대로 정책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심의 또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전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지금 중간광고에 대한 일부 잘못된 보도를 봤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충식 부위원장

- 그래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 공식 보고에 보면 '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중간광고를 희망하고 그런 것을 공식으로 건의할 마음이 굴뚝같지만 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컨대 다양한 대안을 계속 검토하고, 또 현실적으로 KBS 수신료 문제, 시청권 침해 등을 고려해서 공식 표면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보고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이번에 중간광고는 희망사항으로 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내부 논의도 있었지만 방통위에 공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지금 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한테 건의해 온 형식인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절차가 뒤에 보면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가 있네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 김대희 상임위원

-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광고규제에 있어서도 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건의해 왔는데 이 부분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간접광고 포함해서 신중한 의견수렴 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방송광고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미디어렙법에 보면 방송광고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한 내용을 방통위원회에 건의한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야만 결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간광고나 광고총량제의 경우에는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래서 지난번 워크숍 갔었을 때 균발위에서 중간광고를 이야기했는데 중간광고를 숨겨서

또는 안올려서 논의의 실마리를 아예 안 주는 것보다 중간광고를 올려놓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광고를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우리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보고를 해서 사회적인합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간광고 숨기면 언제 중간광고를 논의할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좀 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뒤에 위원회에 보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이것이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수시로 아이템을 넣어서 건의합니까? 종합방안에 넣어놓지 않고 어떻게 건의한다는 것입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균형발전 기본계획(안)이 <붙임>에 있는데 제1차 방송광고균형발전 기본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광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한 후에 다시 제안한다는 입장을 균형 발전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1차는 이 정도 하고 2차는 언제 나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그것은 균발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O 양문석 상임위원

-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균발위 논의가 중간광고를 가장 많이 논의했고 중간광고에 대해서 논의의 소스도 안 주는 이 부분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라디오 광고진흥기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라디오 쪽에서 상당 부분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이 부분들은 빨리 따로 떼어서 법제화와 예산 확보를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렙의 광고판매 영역을 인터넷 모바일 등 뉴미디어로 확대하고, 미디어렙 사업협회를 설립하여 방송 공공성 증진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언뜻 처음에 들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업무영역의 확대 부분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은 전형적으로 인터넷광고를 대행하는 소기업들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있어서 1등 회사가 연간 최대 매출액이 2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면 만약에 이 거대한 두 공룡이 들어왔었을 때 이 소기업들은 한 방에 나가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한 70여개의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의 고민들이 우리 쪽에서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기업들을 보호하면서 영역을 확대할 것이나, 답이 없으면 영역을 확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 담당 기존 사업자들과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들

어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는 2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간광고 부분이 지금 지상파방송이 재정적으로나 여러가지로 다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러저러한 것으로 해서 논의를 자꾸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KBS 시청료 문제는 시청료 문제대로 별도로 또 봐야 하지만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도 논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전향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결국 전체 방송광고의 규모가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관한 규제 완화하는 부분을 하되, 담당기관과 협의하되 신중하게 추진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지 왜 그렇게 신중하게 여대까지 몇 년 동안 한 건도 못 했는데 다시 이것을 신중하게 하려고합니까? 왜 신중하게 합니까? 이유가 무엇이지요?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위원님, 이것은 저희 의견이 아니고 균발위 의견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이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광고금지품목을 풀자는 이야기가 오래 됐는데 한 건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해서, 2가지입니다. 중간광고도 그렇고, 방송금지품목 부분도 그렇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 부분은 나중에 의결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의견 수렴 과정에 돌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모바일이나 뉴미디어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중소광고 대행사의 전력을 위협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한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3페이지 맨 밑에 중소광고대행사에 대한 광고대행 수수료 차별화 등 방송광고 대행시장 상생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재벌의 인하우스 광고회사 이야기 아닙니까?

○ 엄 열 방송광고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대기업 계열 관련된 인하우스 광고대행사로 집중되어 있는 광고대행 물량에 대해서 중소광고대행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생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광고대행수수료 차별화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여러 가지들

을 규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통위 차원의 그런 요구사항들을 감안해서 또 관련부처 협 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이 부분은 경제민주화라는 것과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1983년도 30 년 전에 제가 광고공사 기획부장을 할 때 그때는 광고회사 대행사 중에 대기업 하우스에이 전시가 50% 이상을 자체의 재벌이면 재벌, 대기업 회사 내 일감을 몰아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광고공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제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 수단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너무 규제하기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라는 측면에서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광고를 대기업의 대행사들, 이를 테면 제일기획 등 이런 회사들의 일감이 삼성그룹 것을 전부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 중소대행사들도 일감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고, 일부현대그룹 쪽에서는 일감을 나눠주는 방향으로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방법을 찾아서 중소 광고대행사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일감 몰아주기를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나름대로 찾아보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다른 부처와 협업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의결도 됐고 보고도 됐습니다. 방통위로서는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연말에 그동안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의견수렴을 마쳐서 만든 여러 가지 안들이 의결되기도 했고 보고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방통위가 정말 부서가 굉장히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서 수고해 주신 방통위 직원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성실하게 심의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날짜는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경재 위원장

- 이상으로 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2시 05분 폐회 】